

8) 성적 이의(정정) 신청(학생평가규정 제6조-성적부여 절차)

가) 신청기한: 성적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

나) 신청방법: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해당 과목 성적 이의 신청 접수

다) 처리결과: 담당교원 성적정정의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, 성적확인 기간 내 성적을 정정 처리

9) 학사경고

가)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함

나)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내로 제한됨

※ 단,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고,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18학점으로 함(2019-2학기부터 적용)

다)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함

※ 단,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4회로 함)

라) 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사경고 제적은 재입학 이후의 성적부터 적용함

※ 다), 라)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적용(ex. 2017-2, 2018-1, 2018-2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학사경고 제적처리 됨)

라. 출석인정(학칙 시행세칙 제16조)

1) 출석인정 사유 및 신청자격, 신청기한, 제출서류

호	출석인정사유	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	신청기한	제출서류	비 고
1호	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, 현장견학	현장견학 또는 현장실습 학과 소속 학생	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	주관 학과 공문	- 교내축제, 교내 체육대회, 수학 여행, 졸업여행, MT 등에 참가하 는 경우 비대상 - 학과에서 출전 하는 공모전(대 회)은 비대상
	국고사업의 공식행사	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한 자	〃	주관 사업단 공문	
	학교대표로 대회 참가	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	〃	관련 증빙서류	
	홍보대사 학교행사 지원	홍보대사	〃	관련 증빙서류	
2호	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	예비군 훈련 참여, 군입대 시험 응시 등	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예비군 훈련 확인증 또는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	재판으로 인한 법원 출석은 비대상
3호	본인의 상해나 질병	병원에 입원한 자 (입원 기간)	〃	입퇴원확인서	입원에 한하여 인정
4호	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	(외)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(공유일 포함 5일), 형제자매(공휴일 포함 3일)	〃	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	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
5호	마지막 학기에 등록한 졸업예정자가 취업 한 경우(채용연계형 인턴 포함)	취업자 (기간 제한 없음)	취업일로부 터 2주 이내	재직증명서,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	방학 중 취업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출
6호	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하는 경우	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 (수업일수의 1/2 이내)	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	관련 증빙서류	

호	출석인정사유	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	신청기한	제출서류	비 고
7호	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(보건공결)	여학생, 매월1회	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제출서류 없음	시험기간 제외,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신청 불가
8호	학생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	본인 5일, 자녀 3일	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	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	
9호	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	-	-		-
10호	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	본인 21일, 배우자 7일	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	
11호	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	법정전염병(코로나19 등)의 확진자, 자가격리자, 진단검사 결과 대기자	〃	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	진단검사자의 경우 보건소 통보 문자로 증빙 가능
		코로나19 백신 접종자 - 접종 당일 1일 -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시 추가 1일 - 접종 2일 후 증상 지속시 치료 기간	〃	- 접종 당일: 백신접종 확인서 -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: 증빙서 류 불필요 - 접종 다음날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진단서 제출 *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 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	

2) 신청방법

-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에 출석인정 신청 입력 후, 출석인정신청서(담당교수 서명 필) 및 증빙서류 단과대학(학과사무실) 제출
- 2개 이상 단과대학 학생참가 행사의 경우: 행사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
-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

3) 출석인정 기간

- 출석인정 사유를 모두 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(단, 5호(취업)의 경우 기간 제한 없으며, 6호(특기자 출전 및 훈련)의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가능
(예) 주 1회 수업(15회수업)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
→ 수업일수 1/3이내(총5회)까지만 가능

4)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관련 유의사항

- 원격강좌, 야간수업, 온라인(동영상)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(공결 처리 되지 않음)
-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,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